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1906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24년 5월 27일

○ 회 부 일 : 2024년 5월 30일

2. 제안이유

○ 대외협력기금 국내 및 국제협력계정의 분리와 국내협력계정의 명칭 변경 등을 위해 별도의 근거조례로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설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나. 기금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다.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기금의 재원 및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5~6조)
- 마. 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음(반영).
 - ※ 조례안 제9조제1항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시 성별균형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여 반영하였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조건부 적정
 - ※ 조례안 제9조와 관련하여, 위원 구성(당연직과 위촉직 구분 규정) 및 위원장 직무에 관한 규정 추가를 요청하여 반영하였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4. 4. 12. ~ 5. 2.)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5. 검토 의견

가.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이하 '본 제정안')은 대외협력기금 중 국내협력계정을 국제 협력계정과 분리하여 지역교류협력기금으로 별도의 근거 조례를 마련 하려는 것임.
- 본 제정안은 목적, 정의, 기금의 설치,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재원 등 기금 관련 사항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문체계 및 주요 내용 >

조문 체계	주요 내용
제1조(목적)	- 서울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정의)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정의함.
제3조(기금의 설치)	-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 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함.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함. 단 필요시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 가능.
제5조(기금의 재원)	- 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 운용 수익금, 기부금품 등으로 조성함.
제6조(기금의 용도)	-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경비, 재해 복구경비 등
제7조(기금관리)	- 기금관리공무원(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에 대하여 규정함.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 회의 설치 및 기능	- 위원회 심의사항(기금운용계획, 사업 및 지출규모, 결산 등) 심의 를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함.
제9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 구성인원, 위원장 선출, 위원 임명 및 위촉, 위원 임기 등을 규정함.
제10조(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회피)	- 위원 해촉, 제척 등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름.
제11조(위원회의 운영)	- 회의소집 방법, 개의 및 의결 정족수 등을 규정함.
제12조(수당)	- 회의 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규정함.

○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사업 추진 및 재해재난 구호지원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07년 10월 조례 개정 (국내협력계정 신설 및 2008년도 기금 조성)으로 신설되었으며,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임. 동 기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구성인원 9명) 심의를 통해 관리·운용되고 있음.

□ 기금 개요

ㅇ 목 적 :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우호교류 증진을 위한 교류협력사업 추진 및

재해재난 발생 시 인도적 차원의 구호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ㅇ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o 설치일자: '07.10월 조례 개정(국내협력계정 신설). '08년도 기금 조성

o 존속기한: 2028.12.31.(존속기한 연장 조례 개정안 시의회 가결. '23. 9. 15.)

o 기금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기금관리·운용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 —

◆ 구성인원 : 9명

- 위촉직(8명) : 민간전문가 6, 시의원 2

- 임명직(1명) : 행정국장

◆ **임** 기 : **2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대외협력기금은 하나의 조례로 두 계정(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을 규율하고 있어, 본 제정안은 기금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각각의 계정별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기금의 운용(市) 및 심의(의회) 등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은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24. 5. 30.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됨.

- 또한, 각 기금의 성격에 맞는 효율적인 기금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본 제정안을 통해 운용하는 지역교류협력기금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이라는 목적에 따라 현행 제한적·한정적 사업추진 에서 다양하고 내실있는 기금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행정안전부는 기금의 활용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사·중복적 기금은 단일기금으로 통합·폐지를 권하고 있고, 최근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정비대상으로, 폐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바, 본 대외협력기금 중 국내협력계정이 분리 운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할 만큼 활동적이며,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했는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나. 세부내용 검토

- 1) 목 적(안 제1조)
- 안 제1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본 제정안의 제정 목적을 밝힘으로써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현행 대외협력기금 설치·운용 조례 대비 조문내용 비교 〉

현행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국내 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지방	<u>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u> 상호교류와		
<u>정부와의</u>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u>대외협력기금</u>	<u>지역교류협력기금을</u> 설치하고, 그 운		
<u>을</u>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으로 한다.		

※ 본 제정안은 기금 명칭을 "지역교류협력기금"으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 명칭도 "서울 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본 제정안의 적용대상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여 규정 해석 및 집행 시 혼선 및 분쟁 가능성을 제거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현행 대외협력기금 설치·운용 조례 대비 조문내용 비교 〉

현행 조례 제정안 제2조(국내 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른 지방자 지방정부의 범위) ① 이 조례에서 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에서 '국내 타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 규정한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 법 제2조에서 규정한 광역시·특별 별자치도 및 시・군・구를 말한다. 다 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 만.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 구(서울특별시 관할구역안의 자치구는 는 제외한다. 제외)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외국 지방정부'란 서울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상 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하는 외국의 지방정부를 말한다.

3)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안 제3조~제4조)

-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 확보·공급을 위한 기금 설치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 안 제4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과 같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필요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령에 따른 것이며,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기한이 다다를 때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조례와 함께 기금의 효력을 잃도록 하려는 것으로,
- 일반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일반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며, 존속 목적을 상실하거나, 불필요한 기금의 조성을 축소하기 위해 존속기한을 정한 것으로 사료됨.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 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 존속기한 관련 내용은 2023년 9월 제320회 임시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심사 후 본 회의 원안 가결됨.

4) 기금의 재원(안 제5조)

○ 안 제5조는 기금 조성의 재원을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 운용수익, 기부 금품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현행 대외협력기금 설치·운용 조례 대비 조문내용 비교 〉

현행 조례	제정안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
-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 4. 그 밖의 수입금

- 2.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
- 3.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 4. 그 밖의 수입금
- 다만, 올해 본 기금의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13억원) 및 예치금(14억 2천 3백만원)이 대부분(96.9%)을 차지하고 있는바. 기부금품 등 기타수입 확대 등 수입의 다각화를 위한 행정국의 노력이 요망되다고 하겠음.

[**2024년 기금운용계획**] (2024, 5월말 기준)

・・・・・・・・・・・・・・・・・・・・・・・・・・・・・・・・・・・・						
구 분	2023	2024	증감	비고		
	4,606	2,811	△1,795			
전 입 금	1,000	<u>1,300</u>	300	일반회계 출연금		
이 자 수 입	60	80	20	예금상품 이자수입		
기타수입	6 8		2	기금사업 집행잔액		
예치금회수	3,540	1,423	△2,117	2023년도 이월금		

<수인계회> (다이 · 배마의)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	2024	증감	비고	
계	4,606	2,811	△1,795		
비 융 자 성 사 업 비	3,181	2,058	△1,123		
기 본 경 비	3	3	_	위원회 운영비	
예 치 금	1,422	750	△672	정기·공금 예금 예치	

5) 기금의 용도(안 제6조)

○ 안 제6조는 기금의 용도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재해복구 및 구호경비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용도별 기금 지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방만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고. 예산운용의 투명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현행 대외협력기금 설치·운용 조례 대비 조문내용 비교 〉

현행 조례 제정안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국내협력계정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 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타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 1.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2. 국내 타지방자치단체내에서 발생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한 재해에 대한 복구 및 구호경비 재해에 대한 복구 및 구호경비 3. 기금의 운용 ·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3. 기금의 운용 ·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② 국제협력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증 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2. 외국 지방정부가 당면한 재해에 대한 구호경비 3.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 다만, 올해 사업추진 현황(5월말 기준)을 보면, 5개 사업의 집행률은 24.5%로 (재해재난 구호지원 제외시 38.2%) 저조한 편이고, 특히 '랜선 나눔 캠퍼스' 사업은 집행률이 2.1%에 불과한바, 사업지연 요소의 분석 및 개선을 통해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아울러, 편성액 중 타 지자체 재난구호가 거의 절반(10억원, 48.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의 발굴도 중요한 것으로 사료됨.

[2024년 사업추진현황]

('24.5.31. 기준, 단위 : 백만원)

TI OI UI	HHU	지하이	지원근	(24.5.31. 기단,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편성액	집행액	집행률	추진실적		
합 계 청소년 역사 문화 교류사업	2,058		24.5%	 서울-지역 청소년 역사·문화체험 교류 -'24년 참여 지자체(13) : 경북, 전남, 거창, 고성, 울진, 의성, 구례, 영암, 고창, 진안, 정읍, 제천, 아산 서울-지역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 계획 수립(1월) 		
(청소년정책과)	300	210	70,0%	-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2~3월) - 사업 실행계획 승인 및 1차 보조금 교부(4~5월) -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 사업 추진(6~12월) : 약770명 상호교류 예정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대외협력과)	1,000	100	10.0%	 ● 타 시·도 재해·재난 구호지원 상시 모니터링 및 검토(예비비 성격) - (2024.1.)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피해 지원 100백만원 ※ 2023년 추진실적 ▶ (2023.7.) 중·남부지역 집중호우 피해지 구호금 지원 600백만원 ▶ (2023.8.) 새만금 잼버리 행사장 내 이동식 화장실 지원 50동 		
타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 (관광정책과)	250	175	70.0%	 ● 타 시도와의 연계를 통한 MICE 공동마케팅 운영 PLUS CITIES 지원금 지원 : 총 30건, 1,662명 ▶ 강원도 21건, 경기도 4건, 인천시 2건, 전라북도 3건 ─ 서울시-충청남도 MICE 공동마케팅 상호 교류협력 신규 협약체결 (3.22.) ▶ 협약 체결 도시 : 강원, 광주, 경기, 충북, 전북, 경남, 인천, 대전, 충남 ─ 2024 PLUS CITIES 통합 리플랫 제작 ▶ PLUS CITIES 지원제도 홍보 및 지자체 10개 제도 소개(국·영문 각 300부) ─ 2024 KOREA MICE EXPO 참가 설명회, 국내외 행사 연계 설명회, 국내외 광고시행 논의(4.20.) 		
랜선 나눔 캠퍼스 (대외협력과)	473	10	2.1%	 서울-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랜선나눔캠퍼스 추진 방침 수립 및 서울시-KT 간 업무협의 : '24. 1. ~ 2. 사업 참여자 모집 및 홍보활동 : '24. 3. ~ 4. ▶ EBS 중학 온라인 배너 활용 홍보 : 조회 8,965회, 지원 112명 ▶ 보도자료 배포 : 한겨레신문, 연합뉴스, 이데일리 등 보도 멘토 및 멘티 참여자 모집 및 선발 : '24. 4. ~ 5. ▶ 서울 대학생 160명(예비 33명 별도), 지방 중학생 480명(예비 358명 별도) 선발 대학생 멘토 사전교육 및 멘토링 활동(6개월 간) : '24. 5. ~ 		
약자와 동행하는 농촌힐링 지원사업 (대외협력과)	35	9	25.7%	 한부모가족 대상 농촌 힐링체험 프로그램 운영 (상반기) 부여(5.24~25): 7가정 20명, 영월(6.1~2): 8가정 21명 상주(6.22~23), 괴산(6.29~30) 추진 예정(모집중) (하반기) 부여, 영월, 상주, 괴산 4회 총 80명 참여 예정 		

6) 기금관리(안 제7조)

○ 안 제7조는 기금관리공무원(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전문성·책임성 강화 및 기금관리 체계화를 통하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집행의 적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 현행 대외협력기금 설치·운용 조례 대비 조문내용 비교 〉

현행 조례

제7조(기금관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u>1. 기금운용관</u>

가. 국내협력계정 : 행정국장

나. 국제협력계정 : 경제정책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가. 국내협력계정 : 대외협력과장

나. 국제협력계정 : 국제협력과장

3. 기금출납원은 각 계정별 기금업 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정안

제7조(기금관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 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1. 기금운용관: 행정국장
- 2. 분임기금운용관: 대외협력과장
- 3. 기금출납원: 기금 관리업무 담당사무관

7)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8조~제12조)

○ 안 제8조는 기금의 관리·운용 관련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구체적인 심의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임.

〈 현행 대외협력기금 설치·운용 조례 대비 조문내용 비교 〉

현행 조례 제정안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다 기능)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사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항의 심의를 위하여, 국내협력계정에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 대해서는 국내협력계정 기금운용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의위원회를, 국제협력계정에 대해서 두다. 는 국제협력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회를 설치(이하 "계정별 위원회"라 하 2. 기금지출 대상사업 및 지출규모의 다)하고 각 계정별 위원회는 다음 각 결정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결산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 2. 기금지출 대상사업 및 지출규모의 결정 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결산 하는 사항 4. 삭제<2020. 7. 16.> 5.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는 기금운용 관련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전문성 강화,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수렴, 감독 등을 통해 기금운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 현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3년간 11회 (서면회의 포함)의 회의를 개최하였음.

[최근 3년간(2022~2024.5월) 기금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연도	차	일시	안 건	심의결과
2024	1차(서면) 2.20.~23.		'23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결산	원안가결
2024	2차(서면)	5.9.~10.	'24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	1/
	1차(대면)	2.16.	'22년도 기금결산 및 '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원안가결
	2차(서면)	3.27.~31.	'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1/
2023 3차(대면)	5.22.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존속기한 연장	"	
	3 시 [(내년)	3.22.	'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심의	수정가결
4차 (서면)		7.7.~17.	'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심의	원안가결
	5차(대면)	10.12.	'24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 계획	"
	1차 (서면)	2.15.~16.	'21년도 기금결산 및 '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심의	원안가결
2022	2차(서면)	6.27~29.	'21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
2022	3차 (서면)	10.13.~11.4.	'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23년 기금운용계획	"
	4차(서면)	11.22.~25.	'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1/

- 안 제9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10명 이내로 규정하고, 위원장 선출, 위원 임명·위촉 관련 사항, 임기 등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 서울시 조직담당관 요청사항(위원 구성에서 당연직, 위촉직 구분 및 위원장 역할)과 양성평등담당관 의견(위원회 구성시 성별 균형 고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국내·국외 계정의 분리로 심의대상은 줄고, 위원회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여, 효율적 위원회 운영을 위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현행 대외협력기금 설치·운용 조례 대비 조문내용 비교 〉

현행 조례	제정안
제9조(계정별 위원회의 구성) ① 제8 조 각 호 외의 부분의 계정별 위원회 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계정별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 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촉직위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직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원 중에서 호선한다.

- 1. 소관국장 및 안건 관련 실·국· 본부장
- 2. 지방자치,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 개발원조와 관련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자
- 3. 지방자치,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개발 원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계정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각계정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한다.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당연직 위원: 기금 소관 국장급 공무원
- 2. 위촉직 위원

가. 지방자치, 지역 간 상생 교류협력 과 관련이 있는 법인·단체의 임직원

<u>나. 지방자치, 지역 간 상생 교류협</u> 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u>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u> 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임기금운 용관이 맡는다.
- 안 제10조는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를 규정하고, 안 제11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소집 및 개의·의결 정촉수 등을 정하며, 안 제12조는 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의 근거를 마런하려는 것임.
- 행정기관에서 심의 및 의결 기능이 있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안정성을 위한 근거(안 제8조)와 함께 투명성·공정성(안 제10조), 중립성·합법성(안 제11조) 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법령 또는 조례상 근거)이 필요하여 이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며, 본 제정안에서는 필수적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입법기술적으로 중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 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위원	정 찬 일	입법조사관	이태기